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519980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김관유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개명 전: E)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100,000,000원과이에 대하여 2018 .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3.9.부터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E('D'로 개명,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모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 체결한 매매계약을 26,8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는 원고
A에게 18,214,113원, 원고 B에게 8,660,8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10. 31.부터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5414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 본에 기초한
주식회사 F(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5250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원고들은 위 F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F이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E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5042095)를 제기하였고, 이에 E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E은 원고 A에게 63,295,339원, 원고 B에게 30,097,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E에 대한 위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의 무자력

E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에게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무런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변론기일에 E 본인이 자인함) 현재 채무초과 상태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재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2014.8. 28.경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2018. 5.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당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피고는 E에게 현실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고 한다(변론기일에서 E의 진술).

결국, 달리 피고가 E에게 위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E에게 매매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 말미암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기이전 다음날인 2018. 5. 5.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매매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이 사건 피대위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 하는 원고들에게 피보전채권액을 지급하되,피대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 가 있다(주문 제1항과 같음).

이러한 원고들의 주위적 채권자 대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법리적으로 저지할 만한 특별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다만,대위 행사의 범위만 피대위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함),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 대위 청구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 이는 이상,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 취소권 을 대위행사)와 제2예비적 청구(법인격 부인론에 기초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 일부승소(사실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피대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만 정리함)

판사 맹현무

별지